

1999. 9. 6.

제88회 임시회

검 토 보 고 서

사 회 도 시 위 원 회

전 문 위 원 박 화 순

광주광역시서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

1. 제안사유

- 사회발전에 따른 다양화된 여성복지 욕구 증대에 능동적 대응으로 남녀평등의 촉진 등 여성발전 계기를 마련하고 건전한 사회참여 활동 및 복지사업을 하기 위함.

2. 주요골자

가. 기금의 조성

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금
-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
- 기타 수익금

나. 기금의 용도

-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 및 활동 지원
- 당해연도 기금의 이자발생 수익금 범위 안에서 지출한다.
- 기금의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.

다. 기금운용의 계획

-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- 기금의 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라. 기금결산

- 구청장은 출납 폐쇄 후 3월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-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3. 검토의견

-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하여 설치·운영하는 본 조례안은 여성복지를 위한 다양화된 욕구 충족과 남녀평등의 촉진 등 여성의 건전한 사회참여 활동 및 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원을 확보,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.

-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, 기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금과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, 기타 수익금 등으로 조성하고자 함에 있고, 조례안 제3조, 기금의 용도는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과 여성단체사업 및 자원활동 지원,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및 복지향상을 위한 세미나 등 여성 관련 문제에 대한 조사·연구 및 홍보 등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향후 여성발전을 위하여 각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
-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·운용을 위하여 별도의 여성발전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세입·세출 외로 관리하되, 조성된 기금은 당해연도 기금의 이자 발생 수익금 범위 안에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
또 조례안 제6조에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는 11인 내의 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·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.
- 따라서 본 조례안은 여성지위 향상 및 남녀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소중한 재원으로써 취약한 지방재정에만 의존하는 것보다는 일정 기간 적립기금을 조성하여 지역여성들의 사회참여와 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고자 제반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